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1호

2020. 4. 29(수)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909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 남원시 공고 제2020-910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7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 2020-909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금 운영을 통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기금용자 방식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의 사용용도 규정 개정 (안 제3조)

나.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대여조항 삭제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11),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제1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을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를 “영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 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국자활연수원”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7조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자금의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여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각각 “자활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금”을 “자금”으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활기업”을 각각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기금업무담당주사로”를 “기금업무담당으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지원 신청 용도			
세부내역			
신청 금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남 원 시 장 귀하</p>			

남원시 공고 제 2020-910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활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운영규모 삭제 (안 제1조의2)
- 나.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으로 자활기금 대여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자금 대여 규정 정비 (안 제2조)
- 다. 다양한 자활기업의 창업에 대비하여 현실적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 중복 융자 금지규정 삭제 (안 제6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11),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 및 제8조의2”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